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27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2. 9.
- (3) 회 부 일 : 2025.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관련하여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이 체결·유지된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여야 한다는 요건 외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본부 간 협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상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단체의 대표성을 이유로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는 가맹본부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 가맹점사업자도 자신이 속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양 당사자가 적법한 협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가 정당한 주체 간 투명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효성 있는 협의 절차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가 협의개시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 요청이나 구성원 모집·관리 과정에서 가맹본부 또는 개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하여 등록에 필요한 요건 및 단체 구성원의 자격·명부 등 등록 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14조의2)

나.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거래조건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요청에 대한 협의 시기,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함. 또한,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

부는 해당 단체 구성원의 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 원활한 거래조건 협회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의3, 제33조).

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안 제37조의3 신설).

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2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안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9조 제2항), ② 가맹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규정(시정조치)을 도입하며(안 제14조의3 신설 및 제33조 제1항), ③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맹점사업자단체에게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u>거래조건 변경 협의</u> 등) ① (생략) ② <u>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u>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u>구성과 등록</u>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1. <u>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u>

현행	개정안
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	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표지가맹점사업자”라 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 2. 전체 동일표지가맹점사업자 중 과반수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일표지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한 가맹점사업자단체 ③ 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명칭·목적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구성원의 자격·명부(구성원수를 포함한다) 4.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5.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

현행	개정안
<u>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다)는 그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u> <u>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u> <u>2. 제14조의3제4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등 가맹본부의 사업수행을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경우</u> <u>3. 제2항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u> <u>4. 스스로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u> <u>5.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u> <u>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⑦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u><신 설></u>	제14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의 시기, 횟수, 세부적인 절차 등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1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자격·명부에 관한 사항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

현행	개정안
	<u>하여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u> <u>2. 가맹본부의 사업전략, 영업표지 관리 및 신제품 개발 등 경영상 고유한 판단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u> <u>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u> <u>4.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u> <u>5. 이미 협의가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행위</u> <u>6. 기타 명백히 가맹본부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협의를 요청하는 행위</u> <u>⑤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협의절차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진행 중인 협의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u>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제33조(시정조치) ① -----

현행	개정안
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	----- ----- ----- ----- ----- -----제14조의2제7항, 제14조의3제2항----- ----- ----- ----- ----- ----- ----- ----- -----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과징금) ① ----- ----- ----- ----- ----- ----- -----제14조의2제7항----- ----- ----- ----- -----

현행	개정안
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u><신설></u>	----- ----- -----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u>제37조의3(가맹점사업자단체의 손해배상책임) 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37조의2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로 본다.</u>

현행	개정안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생략)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u>제1호의</u>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 ----- ----- ----- ----- <u>. -----제1호 및 제2호의</u> -----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u>제14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변경등록 등에 관한 업무</u>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권 및 협의 요청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가맹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신고·수리 절차 등이 없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현행법 제14조의2 내용>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가맹본부가 무응답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설립을 공적으로 확인해주고,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시정조치)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른 경우, 등록제라는 공적 절차를 통해 단체의 대표

성을 확보할 수 있어 단체의 법적 지위 및 협상력 제고로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사이의 협의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맹 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¹⁾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²⁾

<시행 예정(2026. 12. 31.) 법률안과 개정안 비교>

구분	시행 예정	개정안
등록요건	-동일 영업표지 사용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가입</u>	-동일 영업표지 사용 - <u>과반수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가입</u>
등록기관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 가능)	
등록사항	단체의 명칭·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구성원의 자격·명부, 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회의와 의사결정방식에 관한 사항 등	
등록 취소 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스스로 등록 취소 요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u>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반복</u>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스스로 등록 취소 요청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청문 제외 사유	-스스로 등록 취소 요청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스스로 등록 취소 요청

1)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12. 31. 시행

2)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개정 여부는 개정 법률 시행 경과를 충분히 고려한 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구분	시행 예정	개정안
협약 요청권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미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협약기준· 절차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대통령 령으로 정함 -미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함
명부 열람권	-	<u>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명부 열람 요구</u> (공정거래위원회는 응해야 함)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 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 개정사항 아님(현행법과 동일)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 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상 고유한 판단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이미 협약이 완료된 사안을 정 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협약을 요청하는 행위 -기타 명백히 가맹본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협약을 요청 하는 행위
협약거부 중단사유	-	<u>가맹점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u>
제재수단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약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할 수 있음	
손해배상 책임	-	- <u>가맹점사업자단체의 손해배상책임 명시</u> - <u>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u>

○ 개정된 가맹사업법과 개정안은 모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는 동일하나 다음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첫째,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일정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가입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등록할 수 있는 반면, 개정안은 과반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여야 등록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가맹점사업자단체만 등록될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에 따를 경우, 단일한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협의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고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만, 등록 요건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난립 및 무분별한 등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요건,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본부의 부담 가중 등을 고려하여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최근의 가맹실태조사 결과(가맹점주 대상)³⁾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률은 낮고 대표성 확보에 대한 인식은 다양

3)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 12. 30.)

-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사업자의 비율은 15.3%이고, 가맹점주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주 가입률에 대해서 50% 이상(36.1%), 30% 이상(31.0%), 40% 이상(11.1%), 10% 이상(9.1%) 순으로 응답하였음.

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등록 요건의 수준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된 가맹사업법⁴⁾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 뿐만 아니라 미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도 가맹본부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다만, 가맹본부가 응하지 않은 경우 제재수단 없음) 반면, 개정안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만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경우,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같이 대표성이 확인된 단체만 협의의 대상이 됨에 따라 협의 절차의 혼선 등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미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협의할 가능성이 차단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4)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이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 횟수·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협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명부에 대한 열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응하도록 하여 가맹본부의 구성원 명부 열람권을 신설하고 있음.
- 개정안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구성원의 자격·명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사항에 포함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 명부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개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 넷째, 개정안은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추가하고, 해당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협의 절차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⁵⁾,

5)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의 거부·중단 사유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관련 사유를 규정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금지행위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고 그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등록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과 협상력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협의요청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현행법은 가맹본부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가맹사업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⁶⁾⁷⁾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단체등록제와 협의의무제의 도입으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이 일정 부분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와 같은 우월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⁸⁾과

6)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관련 분쟁 조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규율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제7조),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제9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2조),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제12조의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제12조의4), 보복조치의 금지(제12조의5), 광고·판촉행사의 실시 및 집행내역 통보(제12조의6), 가맹계약의 갱신 등(제13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제14조) 등

8) 제37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

유사하게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규정⁹⁾을 두는 경우,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켜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⁰⁾

- 아울러, 금지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단일의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협의 거부·중단 사유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재의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정거래위원회는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성격과 배치되며, 점주단체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가맹점주단체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신설이 점주단체의 활동 위축 및 협의권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특정 전문 분야에서 입증할 증거가 일방 당사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인 기업이나 단체 등의 고의·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가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음.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p.635, 국회사무처)

10)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문 의 처

02)6788-5114
